

WTO體制의 地域統合協定(RIA)

崔 哲 榮*

차 례

- I. WTO體制成立의 意義
 1. WTO體制의 成立
 2. WTO體制의 課題

- II. 地域統合協定(RIA)의 背景 - 地域主義(Regionalism)
 1. 地域協定體制의 存立根據
 2. 地域主義의 概念定義
 3. 地域統合의 效果
 4. 地域統合協定の 展開 - 南美共同市場(MERCOSUR)

- III. 地域統合協定(RIA)과 WTO體制
 1. WTO/GATT 1994의 地域條項
 2. WTO體制內에서 地域統合의 類型
 3. GATT 第24條에 대한 諒解(Understanding)
 4.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 IV. 地域統合協定(RIA)의 未來

*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員, 法學博士

I. WTO體制成立의 意義

1. WTO體制的 成立

普遍的 世界貿易體制的 중심축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제3조에 따르면 WTO의 주된 사명은 1986년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시작되어 오랜 기간동안의 協商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무역규범의 원칙들을 施行·運用하며 한층 발전시키는 것이다. 1986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제8차 GATT협상은 1993년 12월 15일 最終協定書를 승인함으로써 정점에 달했다. 동 협정은 GATT의 締約당사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의해 서명되어졌으며 199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WTO의 설립은 세계무역에 있어서 현저한 발전이며 국제무역에 있어 法の 支配를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WTO는 최고수준의 목표로서 세계무역체제의 自由化를 위한 基本構造를 마련하고, 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商品과 貿易에 대한 장벽의 점진적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WTO는 특히 最惠國待遇原則과 內國民待遇原則 같은 基本的 原則들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GATT 1994의 제24조는 關稅同盟과 自由貿易地域의 創設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들 地域統合協定(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 이하 'RIA'라 한다)에 대하여는 最惠國待遇條項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排除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²⁾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경제협력기구 또는 經濟統合協定들은 WTO/GATT 1994에 의한 全世界的 多者間 自由貿易體制的 핵심적 원칙의 하나인 最惠國대우원칙에 위배되므로 보편적 貿易

1) Pitou van Dijck et. al, *Challenges to the New World Trade Organiz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 2.

2) 締約당사국 모두가 最惠國대우원칙을 준수한다면 경제학적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해 資源의 보다 效率인 配分과 利用을 통한 인류의 편익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J.H. Jackson et al,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West Publishing Co., 1995, p.436.; 이외에도 東京라운드에서 채택된 개발도상국에게 특혜의 부여를 인정하는 수권조항과 무역의 상당부분이 GATT밖에서 이루어지는 중앙계획경제를 가진 국가들의 GATT가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最惠國대우원칙을 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모두 最惠國조항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制度를 위협하는 존재라는 批判論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世界貿易機構體制와 地域統合條約의 관계가 상호경쟁적인 관계인가 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인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³⁾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편적인 세계무역 규범으로서 WTO/GATT 1994의 체제내에서 地域經濟統合條約들의 背景과 意義, 그리고 지역경제통합협정이 보편적인 세계무역규범에 궁극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WTO體制的 課題

WTO體制에 대한 挑戰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마라케쉬協定の 채택으로 수많은 課題들이 수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야에 있어서 마라케쉬協定은 國際貿易原則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서비스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기술적으로 세분화된 규정들이 合意에 이르러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 協商 그룹이 자금, 기본통신, 해상운송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따라서 WTO는 과거 GATT의 기능을 수행할 기구로써 뿐만 아니라 貿易政策審査制度(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 분쟁해결제, 경제체제의 변혁기에 있는 사회주의 및 동구권 국가들의 회원 자격에 관한 협상, GATT 1994에 대한 통제·조화 및 이행, 그리고 '세계경제정책결정에 있어 진일보한 일관성을 달성하기 위해'⁴⁾ Bretton Woods機構들과의 協力과 같은 새로운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機構로 발전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WTO는 자신의 多者的이며 世界的規范體制와 地域統合協定(RIAs 또는 우선적 무역지역 : Preferential Trading Areas)의 회원국을 규율하는 원칙 사이의 不一致를 적절히 解決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동안 존재해 왔으며 세계 전역에 존재하고 있는 地域統合協定을 부활시키고 확대·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의 조류를 고려할 때 특히 긴급한 문제이다. WTO가 설립되고 普遍的 貿易規范으로서 GATT 1994가 체결되었음에도 세계각국은 고용보호나 무역수지개선과 같은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地域的인 經濟協力は 이러

3) John H. Jackson, "Perspectives on Regionalism in Trade Relations",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7 (1996), p. 874.

4)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3조제5항.

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regionalism)의 문제는 1990년대 들어 마스트리히트조약(Maastricht Treaty)에 의한 유럽연합(EU)의 성립과⁵⁾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에 의한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창설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세계 각국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지역협정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에 있어 이들 지역내에서의 貿易量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WTO는 多者間體制의 土臺에서 지역통합을 포함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나 지역통합이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등 이 두차원에서의 무역규범간에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⁶⁾

세번째로 WTO는 '新 貿易議題'(new trade agenda)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를 수용해야만 한다. 이들 문제의 일부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이미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로는 貿易과 環境, 그리고 國際投資 및 競爭政策에 관한 규범의 설립등이 있으며 이들 문제에 대하여는 마라케쉬협정의 체결이후 5년 이내에 심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프랑스와 미국이 제안한 貿易과 勞動基準의 연계문제는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협상테이블에 의제로 남게 될 것이다.

II. 地域統合協定(RIA)의 背景-地域主義(Regionalism)

1. 地域協定體制의 存立根據

(1) 理論的 根據

지역협정체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存在價値가 주장되고 있다.

-
- 5) WTO협정은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EC)에 의해 서명되어졌으나 법률적으로 유럽공동체의 기관은 유럽연합(EU)의 이름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이 정식명칭이다. 유럽연합의 명칭에 관해서는 European Commission Delegation, Office of Press and Public Affairs, Post-Maastricht:EC Now Named European Union, *EUR.UNION NEWS*, Dec. 13, 1993 (No.61/93) 참조.
- 6) 다른 한편으로 지역통합협정의 당사국인 WTO의 회원국들은 지역협정의 비당사자인 제3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는 물론 역내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서도 비관세조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에 의하여 보다 증진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절차적 보장의 혜택을 WTO협정에 의해 받을 수 있게 되었다;WTO Newsletter, No.3(May-June 1995), pp.10-11.

우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국가들이 경제통합을 함으로써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보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多者協定の 締結 可能性을 확보하고 國際經濟關係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는 데 있다. 둘째, 지역협정체제는 당해 지역이 갖는 특정한 利害를 반영하는 규범체계를 法規範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추진된다. 세계각국간에 經濟水準이나 政治·社會的 條件의 相異로 해서 발생하는 沒理解 또는 紛爭을 피하면서 경제적 이해를 상호 증진하기에 적절한 制度라는 것이다. 셋째, 지역경제체제의 經驗을 통해서 차후에 多者間의 國際的 經濟協力の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고 또한 實驗的인 協力を 시도할 수 있다. 한 예로 유럽연합(EU)의 경제협력경험들은 좀 더 광범위한 다자간 협상에서 이용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의 저장고라 할 수 있다.⁷⁾

하지만 地域統合協定體制는 각 지역통합체제간에 緊張關係가 발생할 수 있다는 危險性이 도사리고 있으며, 예컨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 사이의 긴밀한 貿易關係와 같은 많은 주요 무역관계가 적절한 어느 한 지역협정체제로 묶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問題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협정체제에는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다자간의 ‘中間的 存在’가 존재하여 지역블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發想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GATT規定에 있어서의 根據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정체제를 GATT가 인정한 것은 ‘자유무역원칙이 타당하다면 한 지역에서의 自由貿易의 福祉惠澤은 생산성과 부를 향상시켜 결국 그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購買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지역협정체제가 貿易創出效果를 발생시킴으로써 GATT의 일반적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⁸⁾ GATT 제24조의 제4항은 지역경제통합에 대하여 GATT義務免除를 허용하는 이유로서 ‘체약국들이 자발적인 협정에 의거 동 협정당사국간에 보다 긴밀한 경제통합을 발전시킴으로써 무역의 자유를 증대시킴과 함께 關稅同盟 또는 自由貿易地域의 목적이 그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당해 지역경

7) John H. Jackson, “Perspectives on Regionalism in Trade Relations”,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7 (1996), p. 874.

8) J. H. Jackson et. al., *Legal Problems of Internatinal Economic Relations*, 1995, p.455.

제통합이 다른 WTO 체약당사국과의 무역에 장벽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GATT 1994 제24조의 양해’의 前文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확대하는 경우 협정당사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대한
否定的 效果의 창출을 최대한 回避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24조의 濫用可
能性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2. 地域主義의 概念定義

(1) 地域主義의 定義

地域主義(regionalism)는 보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의 특수성
을 근거로 지역내의 自治性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國際關係의 한 현상으로서
지역주의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야 하
지만 ‘地域’의 지리적 범위나 문화적 내용, 경제적 단위 또는 정치형태에 따라
정의할 수 있는 一般的 合意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⁹⁾ 그럼에도 지역이라는
것은 ‘국가집단의 관행이나 정치가의 발언이나 또는 국가집단의 조약 또는 협
약상의 용어로부터 발생하는 ‘慣行’의 결과로서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 空間的
範圍’이므로 지리는 지역주의의 본질적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러
한 근거에서 지역주의란 공통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
하는 다수의 독립국으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로서 相互依存과 協力の 필요
성에 충분한 기초를 두고 있는 國際的 實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國際經濟法에 있어서 地域主義의 概念

國際經濟法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는 무역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둘 이상의 政治的 實體 상호간에는 무역에 있어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¹¹⁾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나 ‘지역무역체제’(regional trading system)

9) E.N. van Kleffens, “Regionalism and Political Pacts”, *A.J.I.L.*,
Vol.43.(1949), p.667.

10) N.J.Padelford, “Recent Developments in Regional Organiza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pril 28-30,
(1955), p.25.

11) Jackson et. al., *op. cit.*, p.464.

를 의미하거나 이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서 ‘지역경제통합협정’(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s)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을 지칭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²⁾ 지역주의 또는 지역 통합협정은 貿易關係에 있어 역내국가간의 특혜대우(preferential treatment)를 부여하는 한편으로 역외국가인 제3국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하는 地域的 同盟이라 할 수 있고, 이점에 있어 최혜국대우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중요한 예외에 해당한다. 지역통합협정의 유일한 목적이 經濟的 效率性의 提高는 아니다. 정치적인 동기도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며 地域統合은 당해 지역의 안정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바람직한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¹³⁾

3. 地域統合의 效果

(1) 貿易創出效果

긍정적 효과로서 貿易創出效果(trade creating effect)라 함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들간에 관세의 철폐로 인해 가입국들 상호간의 輸入價格이 관세비용만큼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종전까지 관세장벽 때문에 역내에서 교역되지 않았던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입국간에 새로운 貿易이 발생하는 效果를 말한다. 이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에 있어 공급자들간에 효율적인 무역의 확대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¹⁴⁾ 이러한 肯定的 效果를 이유로 WTO라는 普遍的 貿易體制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세계 각국간에 좀 더 확대되고 심화된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WTO規範의 이행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 WTO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 貿易轉換效果

부정적 효과로서 地域統合協定은 무역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

12) 이러한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무역블럭(trading bloc)이라는 표현은 지역적 경제통합의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암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고준성, “WTO와 지역주의”, 『통상법률』 (제5호), 1995, 8면.

13)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상)』, 법무부, 1994, 54면.

14) Jackson et al., *op. cit.*, p. 465.

라 무역전환효과도 가져온다.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이 결성되어 加入國들간에 관세가 철폐되면 회원국으로서는 역내 회원국으로부터의 輸入價格이 非加入國으로부터의 수입가격에 비해 낮아지므로 종래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오던 상품을 역내에서 수입하게 되어 수입상대국의 전환이 이루어진다.¹⁵⁾ 이를 貿易轉換效果(trade diverting effect)라고 한다. 그러나 당해 가입국의 域內 輸入相對國이 당해 품목의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아니라 단지 역내에서 가장 낮은 국가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역전환효과는 지역협정밖에 있는 보다 效率的인 供給者로부터 단지 貿易特惠(trade preferences)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지역협정내의 비효율적인 공급자에게로 교역상대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貿易轉換(trade diversion) 또는 貿易歪曲(trade deflections)의 문제는 자유무역지역내의 각 加入國이 非加入國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장벽을 설치한 결과라는 점에서 原產地規程問題와¹⁷⁾ 마찬가지로 自由貿易地域의 特性과 관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역전환은 제3국으로부터의 原資材나 半加工品에 대한 상이한 대외관세에서 발생한다. 즉 이러한 제품들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가입국의 관문을 통해 지역내로 유입된 후 그 곳에서 가공되거나 조립되어 이제는 당해지역의 제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 이 제품들은 필요한 원자재나 중간재에 대해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가입국의 영토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제품과의 競爭에서 優位를 갖게 된다. 이러한 慣行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自由貿易地域設立協定에서는 무역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국 자신이 이의 처리를 맡도록 하고 있다.

貿易轉換效果를 불러오는 자유무역지대 域內國家에 대한 특혜는 WTO의 기본원칙인 最惠國待遇原則을 훼손하고 自由貿易原則에 위배되므로 보편적인 貿易規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¹⁸⁾

15) 예컨대 갑국과 을국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여 상호간의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율의 인하 또는 면세에 합의하였다면, 갑국은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이전에는 역외지역의 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던 상품을 관세의 인하 또는 면세로 인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역내국가인 을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병국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16) Jackson et al., *op. cit.*, p. 465.

17) 原產地規程과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崔哲榮, “世界貿易機構(WTO)와 GATT 제24조”,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제8집(仁川大學校 平和統一研究所)』, 1997, 412-414면 참조.

18) 법무부, 『UR협정의 법적고찰(상)』, 법무부, 1994, 54면.

(3) 地域統合效果의 檢討

新古典主義 理論에 따르면 우선적 무역자유화와 복지의 관련성은 기본적으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크기에 의존한다. 輸入의 需要가 價格彈力性을 갖고 있으며, 무역당사국간의 가격차이가 크고, 무역당사국과 세계시장 사이의 價格差異가 작을수록 복지수익은 커지게 된다. 대신에 우선적 무역지역의 외부에 있는 국가들에 의한 地域統合以前段階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이 증가하고, 무역상대방국가외의 국가들에 의한 費用效果가 더 클수록 무역전환효과는 커지게 된다. 우선적 무역지역이 설립이전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무역체제를 자유화한 세계 및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진일보한 다자간의 무역자유화를 이룬 세계에서는 강력한 貿易轉換特惠協定の 위험은 눈에 띄게 감소하게 된다. 결국 GATT 體制下에서 지역통합협정이 갖는 근본적 존재이유는 貿易轉換效果보다는 貿易創出效果의 提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GATT 締約國의 福祉를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는 地域主義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GATT의 원칙적용이 요구된다.¹⁹⁾

4. 地域統合協定の 展開 - 南美共同市場(MERCOSUR)

현재 WTO에 등록된 地域統合協定은 100여개에 이르지만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1986년의 單一유럽議定書(Single European Act)와 1992년의 유럽聯合條約(Maastricht Treaty)을 통하여 발전해온 유럽연합(EU)과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체제, 그리고 南美共同市場(MERCOSUR) 등이 있다.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이미 많이 소개되어 있고 아·태경제협력체(APEC)의²⁰⁾ 경우 완전한 體系를 갖춘 機構로서의 모습이 실체화되지 못한 채 現在進行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潛在的 發展可能性을 지닌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²¹⁾ 형성과정과 공동시장형성의 目標를 살펴

19) Pitou Van Dijck, *op. cit.*, p. 6.

20) 우리나라와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가 1989년 결성되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APEC은 제5차 시애틀회의를 계기로 보다 구속력있는 경제협력체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貿易投資委員會가 설립됨에 따라 아·태경제협력의 실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재봉, 『지역주의심화와 한국의 선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iii면.

21) MERCOSUR는 南美共同市場(Southern Common Market)에 해당하는 스페인어의 약자이다.

보기로 한다.

(1) ‘아순시온 條約’(Treaty of Asuncion)의 締結

MERCOSUR의 기원은 1980년 8월 12일 체결된 ‘몬테비데오 條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약은 1960년에 형성된 ‘라틴아메리카 自由貿易聯合’(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대신에 ‘라틴아메리카 統合聯合’(Latin America Integration Association; 이하 ‘LAIA’라 한다)을 창설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LAIA의 체제내에서 체결된 여러 條約과 議定書들 가운데 1988년 11월 29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간에 체결된 ‘統合, 協力 및 開發條約’은 양국간에 공동시장을 설치하기 위한 基本條件을 정하였고, 1990년 12월에는 우루구아이와 파라과아이가 이에 합류하였으며 1991년 3월에는 이들 4개국간에 ‘아순시온 條約’(Treaty of Asuncion)이 체결되었다.

남미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아이, 우루구아이 등 4개국간에 체결된 ‘아순시온 조약’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會員國들간에 존재하는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 기타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國境移動을 대내적 목표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共同關稅와 共同通商政策을 채택하고 회원국들간에 산업, 금융, 운수,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 거시경제적 정책 및 분야별 정책까지 조화해 나가는 유럽공동체와 같은 共同市場의 設立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아순시온 條約’은 남미공동시장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기초가 되었다. 즉 아순시온조약에 첨부된 貿易自由化計劃(Trade Liberalization Program)에 따르면 4개 회원국의 域內關稅는 1991년 1월 1일 현재 시행되고 있던 관세를 기준으로 하여 점진적, 일률적, 자동적 감축방식으로 1994년 12월 31일까지 完全撤廢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비관세무역제한규정도 같은 날짜까지 모두 제거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4개 締約국은 1994년 12월 17일 ‘아순시온 條約’에 대한 追加議定書를 체결하여 MERCOSUR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완성하고, 1995년 1월 1일자로 MERCOSUR의 對外共同關稅를 施行하였다.

(2) MERCOSUR의 法的 性格

MERCOSUR는 ‘아순시온 條約’에 근거하여 남미4개국간에 형성된 共同市場 또는 關稅同盟을 말하며, 그 자체로서 國際法上 法人格을 갖는 지역통합협

정체제이다. 따라서 MERCOSUR는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국제적 法律關係에 있어 權利·義務의 주체가 되므로²²⁾ MERCOSUR가 주체가 되어 그 設立目的의 達成을 위한 조약의 체결, 기구의 유지 및 활동을 위한 동산 및 부동산의 매입과 사용·수익·처분, 소송 등의 行爲를 수행할 수 있다.

MERCOSUR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共同市場理事會’(Council of the Common Market)와 집행기관인 ‘共同市場그룹’(Common Market Group) 그리고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事務局’(Administrative Secretariat)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 외에 ‘공동시장그룹’의 보조집행기관으로 ‘貿易委員會’(Trade Commission)가 있고 MERCOSUR에 의한 경제통합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 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共同議會委員會’(Joint Parliamentary Commission)와 경제사회분야의 정책협의기관으로서 ‘經濟社會協議體’(Economic-Social Consultative Forum)가 운영되고 있다.

MERCOSUR는 그 統合目標가 계획대로 달성된다면 단순한 관세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적어도 유럽공동체와 같은 經濟共同體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거나,²³⁾ 북아메리카의 NAFTA에 비견되는 SAFTA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²⁴⁾ 하지만 남미국가들간에 유럽공동체와 같은 共同體를 구성하기에는 남미 각국의 政治狀況이나 經濟力 등 내적인 문제점들이 많아 상당한 기간과 혼란을 겪어야만 할 것이다.

(3) MERCOSUR의 統合目標

MERCOSUR는 經濟統合의 目標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會員國들 사이에 존재하는 關稅 및 非關稅規制를 제거하여 물품, 용역 및 생산요소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共同市場을 형성한다.

둘째, 非會員國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對外共同關稅(common external tariff) 및 共同貿易政策을 채택하고 地域的 또는 國際的 經濟通商會議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조화한다.

22) Horacio A. Grigera Naon, "Sovereignty and Regionalism", *Law &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7 No. 4, (1996), pp. 1093-1108.

23) 金斗植, "WTO와 南美共同市場(MERCOSUR)", 『通商法律』, 1996. 6., 62면.

24) Ricard L. Bernal, "Regional Trade Arrang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Law and Policy in International Business*』, Vol. 27 (1996), p. 953.

셋째, 대외무역, 농업, 공업, 재정 및 금융, 외환 및 자본, 용역, 관세, 운송 및 통신, 기타 회원국들이 승인하는 분야에서 회원국들간의 巨視經濟的 政策과 分野別 政策을 조화함으로써 회원국들간에 適正競爭을 도모한다.

넷째, 會員國들간의 統合過程을 강화하기 위하여 相關분야에서 國內法規를 조화해 나간다.

이와 같은 統合目標을 갖고 있는 MERCOSUR는 단지 역내관세철폐 및 대외공동관세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보장과 역내 공동경제정책의 수행까지 포함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經濟共同體’이상의 경제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²⁵⁾ ‘아순시온 條約’은 MERCOSUR를 ‘共同市場’으로 규정하고 있다.

III. 地域統合協定(RIA)과 WTO體制

1. WTO/GATT 1994의 地域條項

GATT 1947은 지역협정의 설립에 대해 관용적이었으며,²⁶⁾ GATT 1994는 이러한 전통적 관용의 자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역협정을 설립하려는 회원국들은 WTO의 회원국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GATT 제24조제7항), 당해지역을 原產地로 하는 물품의 실질적인 모든 무역거래에 관한 關稅 및 기타 貿易制限規範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제거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²⁷⁾ 이러한 조건하에 지역통합협정은 GATT규범의 최혜국대우원칙으로부터의 면제 및 지역통합협정의 비가입국가에게 확대되지 않아도 되는 상호간의 特惠的 關稅가 허용된다.²⁸⁾

地域統合協定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긴밀히 결합된 국가집단 내부에 있어 特惠貿易規則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과의 상충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GATT 1947 및

25) 金斗植, 前掲論文, 65면.

26) John H. Jackson, "Reflections on the Implications of the NAFTA or the World Trading System",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30(1993), p. 501 참조.

27) GATT 제24조제5항(c) 및 제8항.

28)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공동관세장벽의 설립이 허용된다; Frederick M. Abbott, *Law and Policy of Regional Integrat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38.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 헌장의 입안자들은 지역협정의 인정으로 인한 貿易特惠(trade preferences)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였다.²⁹⁾ 미국의 경우 GATT 1947 및 ITO를 통하여 당시 무역특혜의 전형인 英聯邦特惠(Commonwealth Preference)의 철폐를 달성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동맹에 대한 例外認定의 合法性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제안한 ITO憲章草案에는 지역협정을 최혜국대우 및 기타 憲章上의 義務適用으로부터 제외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내용은 GATT 1947 제24조에 반영되었다. 더욱이 당시의 미국대표는 관세동맹의 출범이전에 동맹회원국들의 무역과 비교하여 역외국가들에게 不利益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동맹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⁰⁾ 또한 Havana 회의에서는 상기한 ITO憲章上의 지역통합의 예외에 관한 조항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입국들간에 무역제한은 철폐하여야 하지만 非加入國과의 무역에 관해서는 아무런 共同規制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自由貿易地域’을 GATT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지역적 차원에서 무역을 자유화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세계적인 차원의 貿易과 投資自由化過程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혜적 무역체제의 부활과 확대, 그리고 선진국 및 개도국간의 새로운 특혜무역체제의 설립에 동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통합의 조류는 몇가지 점에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들은 開放的이고 輸出指向的인 發展戰略을 기초로 제도적인 존재로 남고자 하였으며 무역자유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더욱이 많은 개도국들이 WTO/GATT 1994 가입을 통해 多者的인 貿易自由化에 합류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분명히 구분되던 선진국들 또는 개도국들만에 의한 지역무역체제는 先進國과 開途國이 포함되는 우선적 무역지역의 설립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³¹⁾

2. WTO體制內에서 地域統合의 類型

GATT의 제24조는 地域條項으로 불리우며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暫定

29) 고준성, 전제논문, 16면.

30) Jackson et al., *op. cit.*, p.576-577.

31) Pitou Van Dijck, *op. cit.*, p.5.

協定'(interim agreement) 등 3가지 형태의 地域經濟統合協定을 인정하고 GATT 의무로부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협정이 이 세가지 형태의 하나에 해당하는 法的要件 및 基準에 합치되는 경우 GATT의 별도조치없이 GATT義務로부터 면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GATT의 締約당사자가 아닌 실체가 어떠한 지역협정에 속하게 되는 경우 동 협정은 GATT상 自動的 例外가 인정되는 지역협정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GATT의 承認이 있어야 義務의 免除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GATT 제24조제5항의 규정은 GATT 締約國間에 체결되는 지역협정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GATT 제24조제10항의 特別規定에 따라 締約당사국 3분의 2이상의 다수로 이를 승인하는 방법이 있다.

(1) 關稅同盟

關稅同盟이란 締約국이 상호간의 무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고 域外國家와의 貿易에 대하여는 공통의 관세 기타 통상규칙을 적용하는 경제통합이다.³²⁾ 관세동맹이 성립하기 위해서, 즉 회원국 상호간에 있어 域內貿易障壁의 撤廢와 域외국가에 대한 동일한 대외관세 및 그 밖의 통상규제의 적용을 의미하는 관세동맹이 GATT 의무로부터의 자동적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國際收支例外와 관련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인정하는 쿼터와 건강 및 복지를 이유로 한 제20조상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관세동맹의 구성영역간에 있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나 적어도 그러한 영역을 原產地로 하는 제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³³⁾

둘째, 關稅同盟의 각 회원국은 당해 동맹에 속하지 않는 영역으로부터의 무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그 밖의 통상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關稅同盟 또는 관세동맹의 창설을 위한 잠정협정의 경우 당해 관세동맹의 창설시 또는 당해 暫定協定の 체결시 당해 동맹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締約국과의 무역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그 밖의 通商規制는 전체적으로 당해 관세동맹을 설립하거나 당해 暫定協定을 채택하기 이전에 당해 구성영역

32) GATT 제24조제8항(a).

33) GATT 제24조제8항(a).

에서 적용되어 온 관세 또는 통상규제의 전반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³⁴⁾

(2) 自由貿易地域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은 체약국간에 상호간의 무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貿易障壁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關稅同盟과 동일하지만 역외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는 각 체약국이 각각 기존의 관세 기타 통상규칙을 그대로 두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자유무역지역은 最惠國待遇(MFN)원칙에 대한 예외를 다루었던 1947년의 Havana헌장 준비위원회에 레바논이 제출한 제안이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들 특히 프랑스의 지지를 받아 Havana헌장의 제44조에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 44조의 내용이 GATT 1947에 재규정됨으로써 國際經濟法上의 主要 概念의 하나가 되었다.³⁵⁾

自由貿易地域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에 대하여 회원국들간에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通商規制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함을 의미한다.³⁶⁾ 따라서 역외국가와의 貿易에 대해 역내의 각 회원국은 기존의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통상규제를 존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동맹에서와 같은 共同對外關稅도 없다.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들은 제3국에 대한 對外通商政策을 결정함에 있어 완전한 자치를 누리면서 회원국들간의 자유무역을 통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의 경우에도 동 지역협정의 非加入國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전에 당해지역을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던 것보다 더 強化하거나 制限하여서는 안된다.³⁷⁾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관세동맹과 마찬가지로 國際收支를 이유로 한 例外(제11조 내지 제15조)와 保健 및 福祉를 이유로 한 例外(제20조)를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역

34) GATT 제24조제5항(a), GATT 제24조의 解釋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崔哲榮, 前揭論文, 403-6면 참조.

35)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8 (1985), p.250.

36) GATT 제24조제8항(b).

37) Frederick M. Abbott, *op. cit.*, p.38.

을 원산지로서 하는 제품의 동 구성영역간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通商規制를 철폐하여야 한다.³⁸⁾

둘째,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설정을 위한 暫定協定の 경우 당해 구성영역의 각각에 있어 유지되고, 당해 자유무역지역의 설정시 또는 당해 잠정협정의 채택시 당해 지역에 속하여 있지 않거나 당해 協定の 當事者가 아닌 締約國과의 무역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및 그 밖의 통상규제는 당해 自由貿易地域의 設定前에 또는 잠정협정의 이전에 동일한 구성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던 상응하는 관세 및 그 밖의 通商規制보다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

(3) 暫定協定體制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創設 또는 設立을 위한 暫定協定(interim agreement)의 경우에도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ATT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를 허용한다. 실제에 있어 GATT체제에서 추진된 모든 지역통합협정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暫定協定體制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는 일정한 經過期間없이 바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을 출범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³⁹⁾ 즉 이러한 지역통합협정에서는 역내회원국들 간의 내부장벽의 점진적인 撤廢를 규정한 잠정협정의 형태를 취한다.

잠정협정의 형태를 택할 경우 同 協定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計劃 및 日程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⁰⁾ 여기서 ‘적당한 기간’의 개념이 갖는 不確定性으로 인하여 그 적용에 있어 많은 혼란이 있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와 EEC간의 자유무역지역협정에서는 이를 12년으로 규정하였고 그리이스와 EEC간 聯合協定에서는 경과기간을 22년으로 규정하면서 일정한 製品에 대해서는 이 기간을 10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⁴¹⁾ ‘GATT 1994 제24조에 관한 양해’의 제5항에서는 ‘적당한 기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10년으로 한정하였고 따라서 10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당해 暫定協定當事者인 회원국은 필요한 충분한 설명을 WTO 商品貿易理事會에 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있어 상당한 改善을 이루었다.

38) GATT 제24조제8항(b).

39) Jackson, *op. cit.*, p.584.

40) GATT 제24조제5항(c).

41) Jackson, *op. cit.*, p.584.

(4) 地域統合協定の 審査

제24조의 제7항은 지역통합협정의 당사국들은 지역협정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 GATT의 회원국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GATT가입국들은 당해 地域協定에 관한 勸告를 할 수 있다. 지역통합협정의 당사국들은 지역협정을 GATT 회원국의 勸告에 따라 修正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통합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잠정협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보를 고려할 때 당사자가 의도한 기간내에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GATT 관세의 문제로서 地域統合協定の 通報는 GATT회원국들에 의한 심의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作業班'(working parties)에 위임되어 있다. GATT의 회원국들은 지역통합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반대한 적이 없다. 즉 제24조에 의한 지역통합협정의 설립으로 인한 最惠國待遇의 拋棄가 한 번도 거부되지 않았으며, GATT의 사무국장에 의하면 GATT의 회원국들은 제24조 절차에 근거한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公式의인 勸告를 제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⁴²⁾ 이는 제24조제7항에 의한 검토가 다분히 형식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地域統合協定을 심사하기 위한 GATT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GATT의 法律委員會 위원장인 Roessler는 '개별 계약당사국의 主導權으로부터 독립하여 심사할 수 있는 審議機構의 創設'을 요구하였다⁴³⁾

3. GATT 第24條에 대한 諒解(Understanding)

(1) GATT 第24條에 대한 諒解의 成立

GATT 1947 제24조의 규정은 그 意味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예컨대 첫째, 제5항에 따른 關稅同盟이나 自由貿易地域을 설립하기 위한 잠정협정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적당한 기간'(a reasonable length of

42) *Ibid.*, p.40.

43) Frieder Roessler,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e Order, in K. Anderson and R. Blackhurst (eds)",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1993, pp. 311-323.

time)이란 무엇인가 둘째, 關稅 및 自由貿易地域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8항에서 여러차례 언급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셋째, 제8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통합체의 가입국들에게 적용되는 特惠待遇(preferential treatment)를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 原產地의 결정을 위한 규정은 무엇인가 넷째, 관세동맹과 관련하여 제5항(a)에 따라 관세동맹의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그 밖의 통상규제는 당해 同盟의 설립이전에 당해 구성영역에서 적용되는 관세의 일반적인 수준이나 통상규제보다 전체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GATT 1947 제24조에 대한 改正 및 補完의 문제를 1986년 Uruguay 라운드의 GATT條文協商그룹에서 검토하였고, 그 결과 WTO설립협정 부속서 1A의 文書로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가 채택되었다. WTO설립협정 부속서 1A의 문서로 채택된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이하 ‘GATT 1994 제24조의 양해’라 한다)는 WTO設立協定の 일부를 구성하는 GATT 1994로 대체된 GATT 1947과 함께 WTO체제하에서의 地域主義論議에 있어 중요한 문서이다. GATT 1994 제24조의 양해는 제24조의 適用에 관하여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GATT의 基本的 態度를 유지하고 있다.

(2) GATT 1994 第24條에 관한 諒解의 內容

GATT 제24조제7항은 GATT 제24조에 관한 양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상당한 補完이 이루어졌다. ①3가지 형태의 地域協定이 제24조와 합치하기 위해 동조 제5항 내지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再確認하였다. ②제24조제7항(a)에 따라 통고된 일체의 협정에 대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商品貿易理事會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商品貿易理事會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勸告를 당해 가입국에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잠정협정과 관련하여 첫째, 작업반은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제안된 期間 및 措置에 대해 적절한 勸告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동 협정에 대한 추가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잠정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에 대해 상품무역이사회가 이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暫定協定에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작업반은 그 報告書에 이러한 계획 및 일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이를 變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협정 자체를 지속시키거나 발효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의 가입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당해 協定의 運營에 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정의 중대한 變更 및 進展事項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GATT 제24조제12항에 의하면 각 계약당사자는 그 영토내의 地方政府 및 機關이 동 협정을 준수하도록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GATT 1994 제24조에 관한 양해'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措置에 대해 GATT 제22조 내지 제23조 및 '분쟁해결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의 紛爭解決節次를 적용하며 분쟁해결기구가 GATT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책임있는 가입국은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措置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준수의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補償 및 讓許 또는 그 밖의 義務의 靜止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각 회원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GATT 1994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해 다른 가입국이 제시한 입장에 대해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協議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의 경우 상기한 상품무역에 있어 지역조항에 상응하는 규정을 제5조에 규정하여 향후 서비스교역과 관련한 지역협정에 적용할 수 있는 根據條項을 마련하고 있다.

상품의 교역을 규율하는 방식과 서비스의 교역을 규율하는 방식의 差異로 인하여 새로운 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一般協定(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은 GATT 1994의 제24조와 同 條項의 상품에 대한 지역주의적 대우와는 상당히 다른 지역주의적 서비스무역자유화조치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사람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취업비자와 같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國境措置들이 있기는 하지만 관세와 같은 일반적 國境措置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서비스무역의 규제는 상품무역의 규제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역외의 서비스제공자들은 공공연하게 또는 그 운영상의 효과를 통해 自國內의 서비스제공자와 外國(또는 非地域統合當事國)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이한 대우기준을 설립하는 서비스제공허가와 같은 域內規制를 통해 국내적 또는 地域統合協定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⁴⁴⁾ 외국의 서비스 제공자를 差別하기 위한 국내적 서비스제공허가요건, 예컨대 외국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한 국가내의 資格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許可의 要件으로 한다면 외국인서비스제공자가 자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 법규정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⁴⁵⁾

GATS는 가입국의 서비스조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原則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국들이 市場接近을 허용한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을 분리하고 있다. 각 가입국의 가장 중요한 허용은 모든 서비스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가입국에 대하여 最惠國待遇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⁴⁶⁾ 단, 가입국들은 당해 조치가 GATS의 附屬書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최혜국대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⁴⁷⁾ 또한 다른 일반적 원칙은 통보를 포함하는 透明性,⁴⁸⁾ 국내적 규제절차, 세이프가드의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⁴⁹⁾ 일반적인 最惠國待遇條項은 가입국들이 각기의 다른 加入國들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입국들에게 다른 가입국들을 자국민에 대한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加入國들은 외국인 서비스제공자를 차별하는 國內的 制度를 유지할 권한이 있다.

GATT 제24조의 最惠國待遇免除許容은 서비스의 무역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역통합협정의 본질은 역내기업에 友好的인 特惠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통합협정이 GATS 체제하에서도 域內的 서

44) Fredric M. Abbott, *op. cit.*, p.40.

45) 더욱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해 자격의 취득이 자국내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의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어려운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46) GATS 제2조제1항.

47) GATS 제2조제1항.

48) 투명성(transparency)은 일반적으로 무역관련조치의 접근가능성과 명확성을 말한다.

49) GATS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비스제공자들에게 友好的인 特惠를 설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地域統合協定內의 서비스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差等を 둔 대우를 허용하는 새로운 GATS 규정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의 概念的 難點을 회피하고 있다. 즉 內國民待遇와 最惠國待遇로부터의 지역통합협정의 면제를 언급하기 보다는 가입국들이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協定에 가입하는 것을 禁止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⁵⁰⁾ 무역자유협정의 당사국들은 협정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에게 協定の 締結 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장벽을 설립하여서는 안된다. 지역통합협정 역내에 설립된 제3국의 서비스제공자들은 당해 협정에 의해 수립된 特惠待遇를 받아야 한다.⁵¹⁾ GATS의 제5조는 전체 GATS구조내에서 특혜적 서비스협정의 승인을 위한 客觀的 基準을 설립하고자 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있어서 모든 差別의 實質的 撤廢는 GATS의 목적에 따른 내국민대우를 정의하는 GATS 제17조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제17조는 市場接近이 허용된 분야에 있어서, 市場接近許容 일정에 수립된 일정한 조건과 자격의 범위내에서 다른 가입국 국민에 대한 엄격한 內國民待遇를 가입국이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V. 地域統合協定(RIA)의 未來

만약 어떤 地域統合協定體制내에서 WTO체제에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貿易自由化 및 開放義務를 회원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회원국들은 자유화 및 개방에 의한 장점들을 WTO에서도 실현하도록 할 것이며⁵²⁾ 또한 WTO의 長點들을⁵³⁾ 당해 지역협정내에서도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WTO와 地域協定은 상호간에 보다 개방된 무역을 추구하여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地域統合協定體制를 감독하고

50) 하지만 자유화협정은 실질적인 분야별 범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즉시적으로 또는 합리적 기간의 토대에 근거하여 내국민대우와 관련한 GATS 제17조의 의미에서 실질적인 모든 차별의 철폐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일정한 요건은 충족하여야 한다; GATS 제5조제1항.

51) GATS 제6조.

52) 예컨대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 노동, 투자 및 경쟁정책 등의 의제들은 이미 특정 지역협정내에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53) 예컨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협정의 내용과 WTO의 강화된 분쟁해결제도.

통제하기 위한 WTO의 能力과 責任을 강화하여야 할 중요한 이유가 두가지 있다. 첫째, 지역통합협정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WTO 締約國에 대하여 지역통합협정체제의 무역전환효과에 기인한 福祉의 損失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좀 더 개방된 다자간 무역체제의 앞길에 지역통합협정(RIAs)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ATT 제24조에 규정된 내용이 좀 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GATT 제24조가 共同對外關稅를 이용하는 지역통합협정체제에 대해서만 허용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⁵⁴⁾ 또한 지역통합협정이 새로운 가입국에 대하여 자유로운 加入原則을 채택할 것이 요구된다.⁵⁵⁾ 이러한 전제하에서라면 더 이상 ‘地域的 貿易自由化가 효율적인 것인가 아니면 多者間的 貿易自由化가 더 효율적인가’하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國內的 貿易規制의 國際的 調和 또는 國內的 政策들의 協力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가장 훌륭히 달성될 수 있는가 아니면 多者的인 次元에서 가장 훌륭히 달성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되어야 한다.⁵⁶⁾

이러한 기대속에서 1990년대에 들어 GATT에 통고된 地域協定은 모두 33건으로 1947년부터 1990년까지 43년간 통고된 76건에 비하여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현재 WTO의 대다수 會員國들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地域協定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당한 비율의 무역이 이들 地域協定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⁵⁷⁾ 따라서 아직까지 어떠한 지역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制(APEC)가 설립협정을 체결하고 지역통합체로서의 法的 地位를 획득하게 되면 지역협정의 규율을 받는 국가의 수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통합협정의 가입으로 인한 得失의 판단을 위해서는 지역주의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장단기 對應戰略을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세계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남미공동

54) *Ibid*, p. 7.

55) Blackhurst, R. and Henderson, “Regional Integration Agreement, World Integration and the GATT, in K. Anderson and R. Blackhurst(eds.)”,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1993, pp. 426-429.

56) Roessler F., *op. cit.*, pp. 324.

57) 현재까지 약 100여개의 우선적 무역지역이 GATT에 통보되었다; Pitou Van Dijck, *op. cit.*, p.5.

시장(MERCOSUR)을 면밀히 검토하고,⁵⁸⁾ 이들 지역통합협정이 보편적 국제무역규범속에서 갖는 長短點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58)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들간에 관세, 수입허가, 반덤핑 및 상계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조치의 철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협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